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지회 운영 지침

2011년 3월 25일 제정
2013년 1월 25일 일부 개정
2013년 10월 11일 일부 개정

제 1 조 (명칭)

지회는 “대한심혈관중재학회 00 지회”라 칭하고 각 도(광역시 포함)에 하나의 지회만을 인정한다. 단 특정 지회의 정회원 수가 100 명이 넘는 경우 분리할 수 있다.

제 2 조 (목적)

심장 및 혈관 중재기술에 관련된 학술연구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환 및 친목, 그리고 지역사회 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회를 설립할 수 있다.

제 3 조 (구성)

지회의 구성은 현 근무지가 지회가 위치하는 지역에 있는 회원들로 구성하며, 타 지회와의 회원 중복이 불가능하다. 각 지회의 회원은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정회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준회원 및 특별 회원을 둘 수 있다.

제 4 조 (임원)

지회는 회장과 다수의 운영위원을 둘 수 있다.

제 5 조 (신청방법)

지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신청서류를 대한심혈관중재학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상임이사회에서는 이를 심의하여 인준한다.

1. 신청서(공문양식)
2. 지회 내규
3. 최근 2년 동안의 학술활동보고서(소정양식)
4. 회원 명부
5. 서명이 날인된 지회 설립 동의서 사본
6. 서명이 날인된 회원 가입 신청서 사본

제 6 조 (심의 및 설립 요건)

1.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상임이사회에서는 지회가 제출한 구비서류를 토대로 심의한다.

2. 지회 설립을 위한 최소 요건은 다음과 같다.
 - ① 지회 회원은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정회원으로서, 현 근무지가 지회의 지역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타 지회와 회원을 중복할 수 없다.
 - ② 해당 지역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정회원의 최소 50% 이상이 지회 설립에 동의하여야 한다.
 - ③ 1년에 2회 이상, 최소 2년간 누적된 학술 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 ④ 보편 타당한 원칙의 지회 내규를 운영하여야 한다.
3. 다음과 같은 경우 지회의 인준을 취소, 거부할 수 있다.
 - ① 학술활동보고서를 성실히 작성, 제출하지 않은 경우
 - ② 지회의 학술 및 연구 목적이 중재시술분야의 내용과 다를 경우
 - ③ 지회의 내규 중 임원 구성 및 운영방법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조항이 있는 경우

제 7 조 (후원)

1. 대한심혈관중재학회에서 인준을 받은 지회는 학술 모임 개최 및 연구 사업 진행 시 학회에 후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임이사회에서 후원 여부를 심의 결정한다.
2. 후원 가능한 학술 모임 및 연구 사업은 해당 연구회에서 주관하는 경우에 한한다.
3. 후원 가능한 범위는 아래와 같다.
 - ① 지회 사업 지원을 위한 후원금 모집 공문의 발송
 - ② 학술활동비, 연구비, 운영비 관리
 - ③ 학술 행사 지원

제 8 조 (후원 방법 및 절차)

1. 지회는 학술 모임 및 연구 사업 실시 최소 2 개월 전 서면에 의하여 대한심혈관중재학회에 후원 요청을 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① 학술활동계획서 혹은 연구(사업)계획서
 - ② 사업 예산서
2. 상임이사회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후원 여부 및 방법을 정한다.
3. 대한심혈관중재학회에서는 지회 후원을 위하여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으며, 간접비를 제외한 잔액은 지회 적립금으로 전환한다.

제 9 조 (간접비)

지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모집된 연구회 후원금의 10%를 간접비로 징수한다.

제 10 조 (적립금의 사용)

1. 지회 적립금은 별도 장부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지회 학술활동비, 연구비,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지회 적립금의 사용 방법 및 절차는 대한심혈관중재학회 회계처리 규정에 의한다.

제 11 조 (보고)

지회는 아래 사항을 매년 2 월 말까지 대한심혈관중재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변동사항은 수시로 보고한다.

1. 지회 내규(변동사항이 있을 경우만 제출)
2. 지난해 학술활동보고서(소정양식)
3. 지역사회 봉사 활동

제 12 조 (회무)

대한심혈관중재학회는 지회의 회무 등에 관하여 지독감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지회는 학회에서 지급받은 지원금에 대해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 13 조 (해산)

지회는 연구활동과 업적이 미진한 경우,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상임이사회에서 인준을 취소 할 수 있다. 단, 신설 지회의 경우 3년간의 연구활동과 업적을 심의한 후 해체할 수 있다.

부 칙

1. 본 규정에 없는 지침은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2. 본 규정은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상임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